

#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702
------------	------

제출연월일 : 2023. 7.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위탁사무명 : 하남시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관리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

○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 청소년의 지도의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체육 활동 사업
-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4. 위탁시설 개요

○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소재지	하남시 조정대로 111(풍산동)				
규 모	7,114m <sup>2</sup> (지하 1층, 지상 4층)				
인력	계	관장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아무거나 하남
	29	1	23	3	2
이용인원	청소년이용인원 : 연간 52,747명(2021년) / 137,948명(2022년)				

○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재지	하남시 조정대로 111(풍산동)				
규 모	187.5m <sup>2</sup> (지상 2층 일부/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휴게실 등)				
인력	계	관장	팀장	팀원	기간제근로자
	6 (관장 제외)	1 (수련관장 겸직)	1	4	1
이용인원	청소년이용인원 : 201명(2021년) / 206명(2022년) 서비스제공건수 : 8,850건(2021년) / 9,783건(2022년)				

## 5. 민간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호 및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모집
-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9명이내)

##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산출근거
계	<b>2,749,606</b>	
하남청소년수련관 운영	2,749,606	- 인건비 : 1,080,924천원 - 물건비 : 180,046천원 - 경상이전 : 195,349천원 - 자본지출 : 468,782천원 - 사업비 : 824,505천원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b>397,436</b> 국 125,095 도 60,003 시 212,338	- 인건비 : 210,234천원 - 운영비 : 50,026천원 - 사업비 : 137,176천원

##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
- 청소년수련관 사업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능률성 극대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도모

9. 성과평가 결과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3. 10월 중
- 계약체결 : 2023. 11월 중

11. 관련 법령 및 조례 : 붙임 1

## 불임1

## 관련 조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2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한다.

**제4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원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시설 명세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사항)** 법 제17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 제8조에 따른 상담지원,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지원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9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성가족부장관(제9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9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 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2. 3. 8.]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2528호, 2022. 3. 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5. 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68호, 2023. 5. 1., 일부개정]

경기도 하남시(청년일자리과), 031-790-5477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하남시 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 이란 청소년 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수련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따라 청소년단체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탁운영자"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4. "수련시설 운영자"란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운영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수련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련시설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은 비용을 말한다.

## 제2장 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

**제3조(시설의 명칭과 운영)**①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사업)**①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지도와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에 관한 사업
  2.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체육 활동 사업
  4.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상담 및 지도
4.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련시설 운영의 원칙)**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련시설을 운영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 시민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3장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6조(수련시설 민간위탁 선정 등)**① 시장은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 받을 청소년 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 받은 청소년 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을 따르되, 관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제7조(위탁운영단체 운영지원)** 시장은 위탁운영단체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운영단체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자의 운영규정 등)** ① 위탁운영자는 수련시설 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예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조직 및 배치근무 인력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자의 사업)** ① 위탁운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 내 각종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2.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청소년의 자치·자율 활동의 지원
4.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5.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6.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7.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② 위탁운영자는 매년 수련시설 사업운영 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자의 의무)** ① 위탁운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협약사항이나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수련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등)** ① 위탁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련시설 종사자로 임용하고, 그 임용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회계 등을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한 감사·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4장 수련시설의 이용

**제14조(수련시설의 이용자)** 수련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등
2.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5조(이용 신청 및 허가 등)**①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수련시설 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수련시설 운영자는 해당 시설 이용 허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 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신청 접수 차례대로 이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을 우선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1. 수련시설 자체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
3.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

**제16조(이용허가의 제한 등)**수련시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수련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특정 종교의 포교활동이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라고 인정될 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이용료 등)**① 수련시설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수련시설운영자는 수련시설 이용요금을 수련시설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련시설 운영자는 프로그램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련시설의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운영자는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분기별(1,4,7,10월)로 하남시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9.24.>

**제19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수련시설 이용 신청자가 이용 개시 5일 전까지 신청 수리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②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휴관)**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개정, 2023.4.13.>

## 제5장 보칙

**제21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따르며, 위·수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748호, 2019.12.2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하남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부칙**<제1973호, 2021.9.2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8조제3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153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다른조례의 개정(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5.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 2023. 5. 1.] [경기도하남시조례 제2168호, 2023. 5. 1., 일부개정]

경기도 하남시(기획조정관), 031-790-5472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효율적·통일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아닌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12., 2023.5.1.>

2.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신설 2023.5.1.>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3.5.1.>

4.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5.1.>

5.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5.1.>

**제3조(적용범위)**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5.1.>

## 제2장 위탁 대상사무 선정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5.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개정 2023.5.1.>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시장은 사무를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3.5.1.>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개정 2023.5.1.>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5.1.>

**제6조(위탁계획)**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필요성, 위탁기간 및 조건

2. 범위, 내용 및 타당성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

**제7조(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3.5.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개정 2023.5.1.](#)>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개정 2023.5.1.](#)>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개정 2023.5.1.](#)>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5.1.](#)>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개정 2023.5.1.](#)>**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2.](#)>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1.12.](#)>

**제8조의2(선정방법 등)<[개정 2023.5.1.](#)>**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대상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 2021.1.12.>

1. 위탁사무의 전문성,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도입이 어려운 경우<신설 2021.1.12.>

<개정 2023.5.1.>

2. 위탁사무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신설 2021.1.12.>

<개정 2023.5.1.>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수탁기관의 모집대상을 제한하려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신설 2021.1.12.>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시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1.1.12.>

**제9조(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개정 2023.5.1.>**① 수탁기관 선정, 성과평가, 재위탁, 재계약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2., 2023.5.1.>

1. 위탁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신설 2021.1.12.>

, <개정 2023.5.1.>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신설 2021.1.12.>

3.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평가<신설 2021.1.12.>

4.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신설 2021.1.12.>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1.1.12.>

, <개정 2023.5.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5.1.>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개정 2023.5.1.>

3.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23.5.1.>

4.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개정 2023.5.1.>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원만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021.3.12.>

**제10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개정 2023.5.1.>**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개정 2023.5.1.>**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개정 2023.5.1.](#)>

④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등)<개정 2023.5.1.>**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12.](#)>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 한도액,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사항 및 의무이행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1.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21.1.12.](#)>

**제13조(재계약)<개정 2023.5.1.>**①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1.1.12.](#)>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1.1.12.](#)>

3.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4.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6.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1.1.12.](#)>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신설 2021.1.12.](#)>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경우<[신설 2021.1.12.](#)>
6. 그 밖에 수탁기관 임·직원의 범죄행위 등으로 공익상 위탁 운영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1.1.12.](#)>

- ②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계약해지 후 2년 이내에 시의 사무위탁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제1항제4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12., 개정 2023.5.1.](#)>

### 제3장 관리 운영

**제16조(인계·인수)**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5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시에는 자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물품 등의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5.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7조의 2(사용료 징수 등)**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1.12.](#)>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1.12.](#)>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1.12.](#)>

**제18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수탁협약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0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무의 취소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신설 2021.1.12.](#)>

**제21조(성과평가)**① 시장은 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023.5.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에 따라 재계약·사무위탁 제한 등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개정 2023.5.1.>

**제2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16호, 2019.10.1.>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1879호, 202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68호, 2023.5.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